

『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근거 마련과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식생활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개정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에 “무상급식” 조항 신설(안 제2조제3호)
-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2조제4호)
-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“급식경비 지원”, “지원방법”, “지원 신청”, “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”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3조제3항, 제5조제3항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)
- 심의위원회 기능에 “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” 사항 신설(안 제9조제5호)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“교육청”명칭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조문 정비(안 제8조제2항2호, 제10조제2항제5호·제6호)

4. 참고사항

- 「학교급식법」 제10조
-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4조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

5. 검토의견

-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라 무상급식실시를 위한 근거마련과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
-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는 필요한 경비 지원하도록 추가하였고
- 용어의 정의에 무상급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경비지원, 지원방법, 지원신청, 지원대상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
-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강화 개정하였고
-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“학교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에 대한 내역을 신설하였으며
- 특히 시장은 무상급식과 급식경비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